

부산고등법원 2020. 11. 19 선고 2020나53395 판결 [점유회수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0. 11. 19 선고 2020나53395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0. 5. 27 선고 2019가합4836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

피고, 피항소인 1. C

2. D

변론 종결 2020. 11. 5.

판결 선고 2020. 11. 19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. 5. 27. 선고 2019가합48369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, 피고들 명의의 카드단말기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지상 F골프연습장의 인터넷선 및 전화선을 분리하여 위 인터넷선 및 전화선을 인도하고, 2018. 6. 8.부터 제1항 기재 인터넷선 및 전화선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일에 5,568,125원을 지급하라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점유침탈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준용

판사최환

판사이재욱